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2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5. 13. 이필레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0. 5. 13.

다. 상정일자: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5. 2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장덕준 의원

가. 제안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마포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2) 지진방재사업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4)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준호)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의 지진피해 안전을 위해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지진재해” 및 “지진방재”에 대한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라 인용한 조문임.
- 제4조는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근거할 때 법령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 상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

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 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제정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 반영된 사항으로 마포구 지진방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마포구는 지진방재와 관련하여 각종 인프라시설에 대한 물리적 시설 보강에 주안점을 두어 왔었고, 대 구민 교육·훈련 등 각종 방재 사업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음을 감안하면,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보다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행계획과 방재사업 추진으로의 전환적 차원의 명시적인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이로서 매년 시행되는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관한 재난관리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조례안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좀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운영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